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4.3.15. 개최 심의 결과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심의는 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진행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첫 심의로,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 위원들이 숙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심의 대상은 종교(13건), 출신국가 및 인종(8건), 지역(8건), 성별(13건), 나이(6건), 성적 지향(10건), 장애 및 질병(6건) 등 총 64건이다. 그 결과, 위원회는 7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44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9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그 외 4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9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7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개신교는 개+신+교 즉 dog+god+religion이다”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 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개신교는 개+신+교 즉 dog+god+religion이다”로 특정 종교를 해자하여 동물, 신, 종교를 뜻하는 외국어로 빗대 표현하고 있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와 격조를 잃은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특정 종교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는 심의 대상 게시물 “개doG교에 의한 개doG교를 위한 개doG교의 헛소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개doG교_금지법 제정뿐!” 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교회 그리고 ○○○○○○○○○○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회원사에 삭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회원사는 해당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

나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 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19. 5. 23.자 기사 “△△△ "동성애·주사파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뿐”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가 같은 날 개최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세계 10위 대국 -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독교 지도자 포럼’ 행사를 소개하면서, ○○○○○○○○○가 2020년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겨냥하고 있고, MOU를 맺은 □□□□□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잇따라 행사를 여는 등 보수 우파 결집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는 △△△ 목사가 4대강 보 해체 건을 비롯해 주사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라고 연설한 내용을 본문에 언급하고 이를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뉴스의 제목 일부를 사용해 “개doG교에 의한 개doG교를 위한 개doG교의 헛소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건 #개doG교_금지법 제정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 목사의 발언을 게시물에 가져와 비틀어 사용한 것으로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일부 위원은 ‘금지법 제정뿐!’이라는 표현 등은 기독교에 대한 게시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마귀가 들어있어 기도해야” 여성 신도 상대 성범죄 목사 구속] 뉴스 기사의 댓글인 심의대상 게시물 [종교인, 특히 개doG교 목사나 장로는 믿지 말라니까! 딱 한 마디만 해주고 싶다. "도망쳐라!", 그래서 부족하다면 이렇게 덧붙여주겠다. "개doG교회에서 탈출하라!" #개doG교회_폭망해라]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

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 2018.11.8.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마귀가 들어있어 기도해야" 여성 신도 상대 성범죄 목사 구속] 기사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지역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개doG교', '개doG교회', '개doG교회 폭망해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소 거친 언사나 격조를 잃은 표현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탈출하라"라는 표현이 선동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구라경에 노예가 된 개독들만큼 자랑스러웠을까? 2기가 Byte 어떤 한 남자가 TV 진품 명품에 출연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를 들고 나왔는데...“집안의 가보”라며 자랑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것은 바로 [노비문서]였던 것이었다.] 라는 게시물에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

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

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구라경에 노예가 된 개독들만큼 자랑스러웠을까?”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격조를 잃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특정 집단이

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부 위원은 ‘개독’이라는 표현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개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볼 때 이를 혐오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부패의 늪에 빠진 개독교”, “개수”,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종교집단이 한국의 개독교”, “몸도 영혼도 부패한 물질의 속박 속에 헤엄치며 타락해 버린 개독교가 어찌 구원의 종교라고 개나발 부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의 늪에 빠진 개독교. 參國志.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부패한 종교집단이 바로 한국의 개독교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차치하고라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개수의 설파를 보기 좋게 빗

겨나간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십만의 개독교회성전이 즐비한 작금의 양태로 봐서 적극 증명된다. 몸도 영혼도 부패한 물질의 속박 속에 해엄을 치면서 타락해 버린 개독교가 어찌 구원의 종교라고 개나발 부는가? 개수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고난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 지구인들에게 삶의 지표를 몸소 보여주었다고 주둥이로 개나불 불어 되지만 어찌 개수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삶, 잘되는 삶만을 강조하느냐? (중략) 우리나라에만 해도 개독교 교파가 100개가 넘는 교파 비빔밥 천국이다. 개나님은 비빔밥을 좋아하나 보다...개독김치찌개파 개독 된장찌개파 개독 돼지국밥파 개독 쇠고기국밥파는 없는지 모르겠다. 전세계적으로는 2만개나 넘는다니...상식적으로 정상적일수가 있을까?”.

○ 이 게시물은 특정 종교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표현이 다소 거칠고 격조를 잃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예수를 개수라고 한 것이 특정 종교인에 대한 혐오라고 볼 수 있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1-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야 맞아 외조모가 교회 다녀서 같이 가자길래 녹음해 왔는데(이하 생략)”라는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 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

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 맞아 외조모가 교회 다녀서 같이 가자길래 녹음해왔는데 도수리 사이비랑 일반교회랑 다를 게 뭘지 모르겠ㄴㅋ 참고로 저기 있는 아멘 소리는 나 빼고 내주변 모두가 외친 소리임ㅋㅋ 아버지!! 아멘!! 주님!! ㅇㅈㄹ하면서 팔 들고 할렐루야 외치고 좆뽕은 소리해대고 당신의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갈수 업습니다!!! ㅇㅈㄹ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랑 조주 교회 다니라고 난리를 치지..zz 좆독교 뭐가 좋다고 여혐 범벅인것도 모르고ㅈㅈ... 뽕덩어리한테 내 사후를

만긴다는거 자체가 농땡 코메디아니노ㄱ??”. 이 게시물은 표현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와 격조를 잃은 거친 언사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시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특정 종교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대변줄줄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이건 정말 아닌것을 너희들도 잘알잖아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주지말고 무인도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면 되잖아”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

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 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난장판’ ○○ 퀴어축제…“지켜라” 경찰 보호에 행진 마쳐”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대변줄줄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이건 정말 아닌것을 너희들도 잘알잖아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무인도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면 되잖아””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에 대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라고 지칭하고 ‘대변줄줄’이라는 매우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인도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아라’라는 배제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으로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의 ““대변줄줄 남자며느리 여자사위 이건 정말 아닌것을 너희들도 잘알잖아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무인도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면 되잖아””라는 표현은 성적지향이라는 속성에 대한 표현이고 그 표현이 성적지향을 달리하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무인도가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살아라’라는 표현은 말하는 개인의 의견 표명일 뿐 그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나아가 이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았다. 일부 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결국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싫으면 혐오냐? 난 게이가 싫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

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

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경찰 누구 말이 맞나?...결국 '퀴어 혐오'로”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광역시와 경찰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싫으면 혐오냐? 난 게이가 싫다.”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케이팝 이제 짱깨동냐를 빼는 판이 됐다니”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 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

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

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 카페 준회원방의 대화 중 일부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케이팝 이제 짱깨똥냐를 빠는 판이 됐다니”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케이팝의 추락을 아쉬워하며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을 한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뭐가 잘못됐냐? 똥꼬충들 걸러내겠다는게 문제가 될 요지라도 있는건가?”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반 권고 제 3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

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동성애 막아내겠다" 이게 교육감 후보의 문자라니”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18년 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의 선거문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뭐가 잘못됐냐? 똥꼬충들 걸러내겠다는게 문제가 될 요지라도 있는건가?”이다. 이 게시물은 성소수자에 대해 ‘똥꼬충들’이라고 지칭하고 ‘[이들을] 걸러내겠다는게 문제가 될 요지라도 있는건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성적지향을 달리하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일부 위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경찰청에 게이놈들 많다에 500원건다. 허가해준 법원에는 더 많다고 550원건다. 시민의 자유권과 권리도 좀 보장해라..이놈들아. 몇 안되는 똥고 혈어빠진 놈들의 권리만 따지지 말고.. 좀. 내년총선때 이런것들 싹 정리하는당에 무조건 찍는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시가 무리"(종합)”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광역시와 경찰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경찰청에 게이놈들 많다에 500원건다. 허가해준 법원에는 더 많다고 550원건다. 시민의 자유권과 권리도 좀 보장해라..이놈들아. 몇 안되는 똥고 혈어빠진 놈들의 권리만 따지지말고.. 좀. 내년총선때 이런것들씩 정리하는당에 무조건 찍는다.”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축제 개최를 반대하며 그 개최와 관련한 경찰과 법원을 비판하며 성소수자에 대해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을 한 것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다 떠나서 에이즈 원숭이두창 퍼트리며 성욕에 혈떡이는 발정 축제를 왜 하는거니? 역겹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는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 퀴어축제 막겠다”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다 떠나서 에이즈 원숭이두창 퍼트리며 성욕에 혈떡이는 발정 축제를 왜 하는거니? 역겹다”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에 대해 “성욕에 혈떡이는 발정 축제를 왜 하는거니? 역겹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 특히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에서 “에이즈 원숭이두창 퍼트리며”라는 표현은 국제연합(UN) 에이즈 대책 전담 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에서 특별히 발표한 성명[원숭이두창 관련 언론보도와 논평, 성소수자와 아프리카인을 묘사하며 성소수자 혐오와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감염 위험이 큰 사람은 감염자와 밀접한 신체접촉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과 관련한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점을 유념하였다. 결론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동성애, 양성애,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성애. 없어져라”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

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

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경찰 누구 말이 맞나?...결국 '퀴어 혐오'로”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광역시와 경찰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동성애, 양성애,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성애. 없어져라”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성적지향을 나열하며 ‘없어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8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병태들은 병원에 가야지 무슨 축제?...ㅈ”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는

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

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난장판’ ○○ 퀴어축제…“지켜라” 경찰 보호에 행진 마쳐”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병태들은 병원에 가야지 무슨 축제?....ㄸ”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축제 개최를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해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을 한 것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9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성병축젠가요?”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는

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

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 퀴어축제, 무대 차량 돕는 경찰-막는 ○○시 대치”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3년 ○○광역시에서 개최된 ○○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이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갈등을 다룬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성병축젠가요?”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축제 개최를 반대하며 이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2-10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동성애OUT!”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 반 권 고 제 3 5 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협-1-1~6).

○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i)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ii)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iii)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

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

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치워봐라, 내가 치워지나’ 천막에서 차 소리 들으며 잠든 밤”의 댓글로, 해당 기사는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 목사를 둘러싼 교회 내부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동성애OUT!”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에 대해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5. ○○○ 위원 반대의견

○ 자율규제는 무규제나 탈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혹은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특히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약의 제정 및 집행 주체로서 자율규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약으로 회원사 스스로 기속됨을 약정한 것이다. KISO는 자율규제기구로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불법정보에 이르지 않은 ‘혐오표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KISO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삭제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즉 KISO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의한 판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명확하고 엄격해야 하며 자의성과 임의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첫째, 이용자는 자율규약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에 대하여 혐오표현이 아님을 직접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제

12조) 다룰 방법이 없다.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는 그 부당함을 재판 또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자율규약에 의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이용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둘째, 자율규약에 의한 조치는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되며 ‘사적 검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율규약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부당한 공적 검열의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히 인지될 수 있으나, 오히려 영향력 있는 언론사나 플랫폼 기업에 의한 사적 검열은 영업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라는 한계로 인해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사적 검열’의 확산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담구를 억제하며 다양한 의견 충돌과 토론을 통해 더 발전적 논의의 장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이러한 자율규제기구로서 KISO의 역할과 자율규약의 해석 및 적용의 원칙,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OUT!”이 혐오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 첫째, ‘OUT’이 가지는 ‘가치중립적 단어’로서의 속성이다. ‘OUT’은 욕설이나 비속어 등처럼 주관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중립적 단어가 중심이 된 표현에 대하여 하나의 가치, 즉 혐오라는 가치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다의적 해석가능성’으로 인한 ‘임의적’ 판단 가능성이다. ‘OUT’은 함께 표현된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며, 단어의 합성에 의해 그 의미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정당 OUT”·“△정당 OUT” 등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표시일 수 있으며, “성범죄자 OUT”처럼 특정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 정치활동을 하는 교수에 대하여 “교수 OUT”은 특정 활동에 대한 반대를 의미할 수 있다.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 OUT”은 이들의 시위에 반대한다는 표시일 수 있다.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에서 축출하라”는 의미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으며, 수용자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OUT”의 경우 장애인 시위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비롯하여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에 반대하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다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의 합성에 대하여 혐오표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임의적 판단의 위험을 내포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 다수의견이 “동성애OUT!”을 혐오표현으로 판단한 것은 “‘OUT!’을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본 것이나, 수용자에 따라서는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반대의견의 표시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다를지언정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삭제되어야 할 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치중립적 단어가 중심이 된 다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에 대한 혐오표현의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성애OUT!”은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중국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바퀴벌레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6.자 기사 ““한국 여자가 나더러 짱X란다” 중국인 1억 조회수 돌파한 영상”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소개한 내용으로 중국인 남성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여성에서 모멸을 당했다며 이 여성이 “중국사람”, “중국 짱X”등의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중국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바퀴벌레다”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중국인”들을 “바퀴벌레”에 빗대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표현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중국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바퀴벌레다?”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표현은 게시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외국에서 가장 크게 떠드는건 춘장들 아니냐?”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6.자 기사 ““한국 여자가 나더러 짱X란다” 중국인 1억 조회수 돌파한 영상”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소개한 내용으로 중국인 남성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여성에서 모멸을 당했다며 이 여성이 “중국사람”, “중국 짱X”등의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외국에서 가장 크게 떠드는건 춘장들 아니냐?”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소스로 널리 알려진 “춘장”을 빗대어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표현으

로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저런식의 고급 외국인력이라면 수백만명이면 어떠랴 실상은 절대다수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이란 북아프리카 동남아 쓰레기들뿐”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5.자 기사 “여기가 평택이야 텍사스야?” 삼성 반도체 공장에 외국인 때로 물린 사연”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모바일, 5G,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칩을 제작할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첨단 공정을 진행할 외국인 인력들이 최근 평택에 위치한 삼성 파운드리를 찾아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저런식의 고급 외국인력이라면 수백만명이면 어떠랴 실상은 절대다수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이란 북아프

리카 동남아 쓰레기들뿐”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이란 북아프리카”에 대하여 “쓰레기들”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일본놈이다 꺼져라 원숭이나라로..”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

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

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11.자 기사 ““독도는 일본 땅” 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실형”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29일)에 태극기를 불에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실을 보도한 내용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일본놈이다 꺼져라 원숭이나라로..”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주범이 일본인이며, 그러한 일본인은 본국(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일본놈이다 꺼져라 원숭이나라로..”라는 본 심의대상 표현은 게시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일본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황인종들이나 개처럼 일하지 ㅋㅋ”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6. 19.자 기사 “"야간근무는 못 한다고?" ○○○○, 대기업문화에 당혹”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의 고강도의 근로 환경, 야근·추가 근무 등을 강요하는 기업문화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맞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 불만과 이에 대한 ○○○○경영진 반응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황인종들이나 개처럼 일하지 ㅋㅋ”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황인종”에 대하여 “개”라고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처럼이라고 하고 있지, “개”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흑인검뎌이♥랑 전라도 빨갱이♥들이랑 습성이 비슷하네요♥♥”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11.자 기사 “제복 입고 퇴근하는 여경에 강도짓에 총격 살해…미국 10대들”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미국에서 10대들의 총기 범죄로 20대 여성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흑인 껌똥이♥랑 전라도 빨갱이♥들이랑 습성이 비슷하네요♥♥”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흑

인”을 “검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흑인검뎡이♥랑 전라도 빨갱이♥들이랑 습성이 비슷하네요♥♥”라는 본 심의대상 표현은 게시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 흑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진짜 한국종이 중국종보다 더나쁘고, 더러움. 하는행동은 아프리카종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11.자 기사 “돈 받고 총기 옹호했나요? 美교민사회 두 의원 저격”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미국 ○○○ △△△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한 인교포 일가족이 희생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미 연방하원에서 의정활동중인 □□□ 소속 ◇◇(△△△△△ 40구), ○○○(△△△△△ 45구)의원이 □□□□□□로부터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민들의 비판적 반응을 보도한 내용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진짜 한국종이 중국종보다 더나쁘고.더러움.하는행동은 아프리카종임”이라는 표현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다소 거친 언사나 격조를 잃은 표현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3-8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일본은 정말 추악스럽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인종·국가”를 이유로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1. 5.자 기사 “日 극우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역사 교육 문제"”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개봉 영화 “△△”과 관련해서 일본의 일부 누리꾼들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잇따른 역사, 문화왜곡과 관련해서 역사교육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일본은 정말 추악스럽다”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물은 일본에 대한 비판적·주관적 의견 표명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전라도 어디처럼 금으로 만들지 그랬냐,,,,,하여간 경상도것들은 나라에 1도 도움이 안돼,,,,,”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옥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

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23. 6. 19.자 기사 "새 주인이 안 찾아가"...154만원에 낙찰된 '20억' 거북선, 철거 위기"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가 2010년 지자체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북선 모형이 불용 처리되자, 공개 입찰을 통하여 154만원의 헐값에 팔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전라도 어디처럼 금으로 만들지 그랬냐,,,,,하여간 경상도것들은 나라에 1도 도움이 안돼,,,,,"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저쪽동네 애들은 짹 바 리 씨가 있어 그런가 알뜰게 생겼어~~”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23. 6. 19.자 기사 "△△△ "쫄쫄한 재미…□□□ 톡 건드려 ◇◇◇으로부터 '패륜' 대어 낚아""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 □□□□ 최고위원이 □□□ ◇◇◇◇◇◇당 의원을 겨냥해 '무릎보호대 기절 쇼'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하여 ◇◇◇ ○○○ 대표가 패륜이라고 반응하자 △△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언급해 주는 자체가 정치적 이득을 본 것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쪽동네 애들은 짹 바 리 씨가 있어 그런가 알뜰게 생겼어~~'라는 표현은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가 있거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지금의 경상인은.. 신라시대 나당연합군으로 왔던 당나라 군사들의 후손으로.. 당시 당나라 군사는 신라 인구에 맞먹는 10만 이었음.. 당나라 군사는 중국인 특성대로 가오잡고 노략질만 일삼았으니.. 당시 신라군은 삼국통일 전쟁통에 거의 전멸하여.. 삼국통일후 사실상 경상도엔 당나라 군사만 남았으며..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번식에 번식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경상인의 습성이 중국인과 같은 것은 이런 연유 이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 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옥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들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들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계

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23. 5. 15.자 기사 "20대 女 "10대 남학생과 애정행각 벌이다 20층 아파트 아래로 추락""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 □□에서 10대 남학생이 20대 성인 여성과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성인 여성을 20층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지금의 경상인은.. 신라시대 나당연합군으로 왔던 당나라 군사들의 후손으로.. 당시 당나라 군사는 신라 인구에 맞먹는 10만 이었음.. 당나라 군사는 중국인 특성대로 가오잡고 노략질만 일삼았으니.. 당시 신라군은 삼국통일 전쟁통에 거의 전멸하여.. 삼국통일후 사실상 경상도엔 당나라 군사만 남았으며..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번식에 번식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경상인의 습성이 중국인과 같은 것은 이런 연유 이다..”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전라도 여자가 강하거나 드세지는 않는데 아무한테나 들이대서 나는 거른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23. 5. 8.자 기사 "○○도 출신 여성 피해주세요"…돌싱男女 "전 배우자 닮은 사람 싫다"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이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며 제목에 있는 특정 지역 출신 여성을 피해 달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전라도 여자가 강하거나 드세지는 않는데 아무한테나 들이대서 나는 거른다”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가 있거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차~~암 대구 스럽다 대구 스러워~~!!!”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옥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

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17.자 기사 "○대통령이 보낸 5·18 추모화환, 한 여성이 쓰러트려"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보낸 추모 화환을 한 여성이 쓰러뜨린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차~~암 대구 스럽다 대구 스러워~~!!!”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가 있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강원도 감자들 원하는데로 해줘라 감자랑 대구 변하는것은 사막에서 꽃피는거보다 어렵더라 20대는 쥐박이 교육의 결과니까 포기하고”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6. 3.자 기사 "국민 58% 설악산 개발 반대...강원도 주민은 찬성"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 사업을 반대하나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 주민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강원도 감자들 원하는데로 해줘라 감자랑 대구 변하는것은 사막에서 꽃피는 거보다 어렵더라 20대는 쥐박이 교육의 결과니까 포기하고"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가 있거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충청도 검둥이 껌새놈 추하다 꺼져라”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옥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

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30.자 기사 ““○, 부부싸움 끝 가출. 그날 밤 목숨~” 주장한 ○○○...첫재판서 “상처줄 의도 없었다””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2017년 9월 ○ 의원이 ○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 전 대통령 부인) △씨와 아들이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하여 ○ 의원이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충청도 검둥이 껌새놈 추하다 꺼져라”이다. 이는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 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4-8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지역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충청도가 명청도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으휴”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관련 입법례에서는 주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국적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국내에서는 출신 지역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명기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1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혐오표현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이고(64.2%), 특정 지역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74.6%), 그 다음으로 여성(68.7%), 노인(67.8%), 성소수자(67.7%), 이주민(66.0%), 장애인 (5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노인, 특정 지역 출신, 여성,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순이었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특정 지역 출신, 페미니스트,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순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년 혐오표현 관련 시정요구의 분석에서도 혐오표현의 목표집단은 특정지역민 42.8%(1,427건), 남성 16.1%(536건), 여성 14.1%(470건), 장애인 8.1%(271건), 역사왜곡 5.9%(197건), 위안부5.0%(165건) 순이며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도 지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들에서 국내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에 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해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용자와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 지역 관련 혐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에 따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특수한 역사적 요인을 고려할 때 관련 혐오표현은 정치, 문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혐오표현을 의사표현의 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인 내지는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나 혐오의 사상을 만연시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련 혐오표현은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언론의 2023. 5. 30.자 기사 "故○○○, 부부싸움 후 목숨 끊어" ○○○ 첫 재판…"상처 줄 이유 없어"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2017년 9월 □□□ 의원이 ○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 전 대통령 부인) ◇씨와 아들이 △△△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충청도가 명청도가 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으휴"이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가 있거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하 ~죄없는 개까지 역겨워지게 만드는 성괴의 마력”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 2023. 5. 28. 기사 “○ 부부 ‘동물농장’ 깜짝 출연…“유산 아픔 반려견 통해 치유”에 대한 댓글로서, 외양(외모)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에 해당하지 않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이 여자 머리 너무 커요 트랜스젠더 같기도 하고 인조인간 같아 두 관종이 나대는 꼴 진짜 못봐주겠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 2023. 6. 10. 기사 “한산모시 입은 ○○○ 여사 "우수성 세계에 널리 알려야"”에 대한 댓글로서, 외양(외모)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에 해당하지 않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아...진짜 와꾸 개뺨았을거 같아서 혐오감들어...”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성형관련 카페(현재는 삭제됨)의 댓글로서, 외양(외모)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에 해당하지 않아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장애우 인증 하시나 ㅋㅋ □”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 2023. 6. 20. 기사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의 댓글로서, 해당 표현이 특정 집단이나 속성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일타 강사 △△△을 상징하고서 한 표현으로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너네 죄다 장애인들이라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님?”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

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심의대상은 게시물(현재는 삭제됨)의 댓글로서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5-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1. 무슨 장애가 벼슬인줄 아네, 2. 장애가 무슨 자랑이냐”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

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 2023.01.05. 기사 ““손 물어 뜯고 철판 휠체어 돌격… ○○○, △△△보다 심해” 경관들 호소”의 댓글로서 장애인단체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 아스퍼거 증후군?..."머리 자르고 슬리퍼, 범행때 행적 특이">라는 뉴스 기사(2023. 6. 18.일자)에 달린 댓글로서 “아스퍼거가 아니라 잔인한 욕심은 가득한데 지능이 낮은거라니까 여자들 평균이랑 상당히 비슷한 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여성 범죄자의 잔혹한 범죄행위의 원인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이란 ‘욕심은 가득한데 지능이 낮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이란 단순히 여성을 차별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분리·구별·제한·거부 하자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동 안건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는 발화자의 편협된 감정과 의견의 표현으로,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분리·구별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지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흰색○○에 글씨체를 보니 김여사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동안건은 언론사의 <민폐 주차 운전자…옆 차에 침 뱉고 "엄마없는 티내지 마라" 욕설 쪽지>(2023. 6. 18.일자)라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글씨체를 보니 김여사네’라고 함으로써 여성을 ‘김여사’로 지칭하였다.

○ 심의대상 게시물의 기사 댓글은 민폐 주차 운전자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사람이 여성이라고 가리키며 김여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혐오표현의 여부를 판단하건대 여성을 ‘김여사’로 지칭하는 것 자체를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

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자가 계집이라 그런가? ○○은 키예프라고 하는데 자꾸 키이우로 바뀌어서 쓰네. 이게 바로 언론의 여론조작이지.”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 “우크라가 서명한 합의 쓰레기통에…미·영·프·중 보증국” 초안 공개>(2023. 6. 18.일자)라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사를 ‘계집’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으로 ‘집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기사의 작성자인 기자 △△△라는 특정인을 향해 ‘계집’이라고 지칭함으로써 해당 기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러한 표현 자체를 여성집단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남자는 하늘이다 여자들아, 여성 인권이니 머니 이딴 거들 때문에 버릇 더럽게 들여놔음”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모유수유 중인 아내, 저녁밥상 달랑 김치찌개·멸치볶음 주더라”>(2023. 6. 17.일자)이라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가이드라인의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을 속성으로 하는 집단을 가리키기는 하나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여성 인권 때문에 버릇 더럽게 들여놔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남성을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로 다루며 여성 인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맥락상 여성을 인권보호의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 인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여성을 인권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장으로 여성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것으로서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지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주유하고 가는데 뒤에서 “악!”...그때서야 깨달은 ‘실수’>라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역시나 여자~~~~ㅋㅋㅋㅋ여성분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동 안건은 ‘역시나 여자’라고 하여 여성이 운전 미숙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라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화자의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어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역시나 여자’라는 표현 자체를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여자들 거짓근성 나왔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함 달라고, XX년아”...‘아는 오빠’ 밥 먹더니 성추행범 돌변>(2023. 6. 16.일자)에 달린 댓글로서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여자들 거짓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사와 댓글의 맥락을 고려해볼 때 ‘거짓근성’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와 여성이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거짓근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평가이기는 하나 이는 발화자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 기사 댓글로 인한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는 별개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총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누군가에게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헌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로서 “멀쩡한 사람도 여대가면 정신병자 페미되던데 걱정이네요..하필이면 여대를 :::”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동 안건의 게시물은 여대와 페미니스트, 정신병자를 동일시하면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맥락상 여성들이 있는 여자대학교와 여성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이고 정신병이 있는 존재임을 내포하여 발화자의 여성, 여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는 하나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실제 ‘페미’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표현으로 활용되거나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낙인찍는 효과와 함께 이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바 해당 표현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8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한남들 쿵광이 타령=지가 쿵광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사의 <3040 남성 절반이 ‘비만’ 상태… 기준이 잘못된 걸까>(2023.01.05.일자)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남성을 ‘한남들’이라고 지칭하며 쿵광이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¹⁾

○ 혐오표현에서 특정집단을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라고 한다면 성별 속성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은 성별 속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²⁾ 다만 혐오표현의 특정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여성혐오와 달리 남성혐오가 성립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 동 안건의 경우 남성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므로 여성혐오와 함께 남성혐오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특정속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을 역사적 소수집단에서 벗어나 폭넓게 인정하는 주장들도 제시되고 있고, 국민인식 조사 등에서도 여성혐오뿐 아니라 남성혐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아울러 경험칙상 우리 사회에서 여성혐오, 남성혐오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남성집단이라고 하여 여성집단과 달리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지 말자고 주장하거나 남성혐오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동 안건은 남성비만이 많다는 뉴스에 달린 댓글로서 한국남성을 한남들이라고 지칭하며 비만의 한국남성들을 ‘논쟁에서 열세로 밀리자 쿵광쿵광 달려오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 쿵광이란 페미니즘 혹은 성별에 관한 논쟁에서 페미니즘 측이 열세를 보일 때, 페미니스트들이 입을 막으려 달려오는 모습을 의성어에 빗대어 사용되기 시작한 은어이다.(나무위키, 2023. 8. 9). <https://namu.wiki/w/%EC%BF%B5%EC%BE%85%EC%9D%B4> 사용례: “쿵광쿵광 그들이 몰려온다”

2)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에서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63%,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은 58.3%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 우선 ‘한남들’이라는 표현은 한국이라는 출신국가와 남성이라는 성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서 한국남자라는 특정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한남’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한국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활용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한남’이라는 용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의 언어사용을 고려했을 때 한남이라는 용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주로 여성혐오에서 활용되는 부정적 표현을 남성에게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남성이라는 성별 속성을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9-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여자축구 세계랭킹과 성-불평등지수의 상관관계>(2022. 12. 29.일자) 뉴스 기사의 댓글로서 “중딩한테도 쳐발리는 수준이니까 망하지 ㅋㅋ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동 안건의 게시물은 축구경기 수준에 대한 평가로 보이며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9-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

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여자축구 세계랭킹과 성-불평등지수의 상관관계>(2022. 12. 29.일자) 뉴스 기사의 댓글로 “웁소 여편네들이 무슨 스포츠입니까?” 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이란 단순히 여성을 차별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적용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분리·구별·제한·거부 하자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동 안건의 게시물은 ‘여편네들이 무슨 스포츠입니까?’라는 표현은 비록 의문형이기는 하나 여성이 스포츠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스포츠에서 여성의 진입이나 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표현은 스포츠에서 여성을 배제하자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여성을 우리 사회에서 분리·구별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므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9-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누군가에게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폐해를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ㅋㅋ 요즘 폐미하면 사람 취급 못받는다. ㅋㅋ 전형적인 극페미신문인 일다 댓글란에서도 폐미들 화력 밀리는게 보이지? ㅋㅋ 폐미=음침하고 사회부적응하고 지능 낮은 애들이 하는 짓 ㅋㅋ”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여자축구 세계랭킹과 성-불평등지수의 상관관계>(2022. 12. 29.일자) 뉴스 기사의 댓글로서 축구선수로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페미니스트들을 사회부적응자이거나 지능이 낮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는 발화자의 왜곡되고 그릇된 사고 또는 편협된 감정과 의견의 표명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발화자의 왜곡되고 그릇된 사고나 감정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요즘 폐미하면 사람 취급 못받는다’는 페미니스트의 차별을 정당화 조장하고 있는 표현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해 공론장에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해당표현은 페미니스트들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연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10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앵 ㅋㅋㅋㅋ 한남 자존감 존나높네 니들이 그냥 싫다고 ㅋㅋㅋㅋㅋ”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한남들’이라는 표현은 한국이라는 출신국가와 남성이라는 성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서 한국남자라는 특정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활용되고 있고, ‘한남’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한국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활용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한남’이라는 용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의 언어 사용을 고려했을 때 한남이라는 용어를 모두 한국남성에 대한 비하조롱 표현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미혼남자 34% "여성들, 빼놓아진 페미니즘 결혼관 고쳐야">(2023.01.04.일자)라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한국남자를 한남이라고 지칭하며 자존감이 높다거나 그냥 싫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발화자의 남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의견의 표명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6-1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각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 필요성)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대체로 “개인의 타고나거나 인지된 속성(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거의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 본능적 속성에 가깝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 표현이나 선동적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특정집단과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차별 배제시키고 나아가 폭력을 선동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 (혐오표현 입법동향)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고 각국도 입법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 관련하여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 형태로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행법 상 혐오표현 규제 한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으로도(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일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표대상자가 누구인지 가리킬 것 즉 피해자의 특징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로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을 제한할 규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강릉 도로 위에 쏟아진 돼지 130마리…태연하게 낮잠도>(2023.01.05. 일자)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서 “한녀들 외출중”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

○ 동 안건은 돼지를 가리켜 한국여성을 의미하는 한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녀들’이라는 표현은 한국이라는 출신국가와 여성이라는 성별에 기반한 혐오표현에서 한국여자라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녀’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한국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활용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한녀’라는 용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의 언어사용을 고려했을 때 한녀라는 용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돼지를 가리켜 한국여성을 의미하는 ‘한녀들’이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한녀’라는 표현은 이미 오랜 동안 한국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굳어져 통상적으로 여성혐오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정부분 제한되어야 하며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소수집단인 경우 더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 의견이 제시되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한 대학교수가 출제한 시험문제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간첩 운운하는 것들은 최소 65세 이상이라고 보면됨 늙은 노예들 추잡스럽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노인’(69.2%)이었으며, 온라인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 중 노인은 여성(80.4%),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에 이어 4위(72.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갈등이며,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25%, 심각한 편이다 54%)고 대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절반(49%)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세대갈등은 사회가 통합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대갈등은 ‘언어’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대갈등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6. 20 기사 "○○○○과 △△△에 간첩이..대학시험지에 등장한 황당한 문제"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이 기사는 한 대학교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수업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왔으며, 시험문제에도 이러한 시각을 담은 문제를 출제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 “간첩 운운하는 것들은 최소 65세 이상이라고 보면됨 늙은 노예들 추잡스럽다”이다. 이 표현은 노인집단 전체를 특정하기 보다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표현이 노인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예들, 추잡스럽다라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허용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오로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노인세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무식한 늙은이들 적당히 살다가라. 니네가 저출산의 원인이고 개고기가 나라 처팔아먹는 뒷받침이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노인’(69.2%)이었으며, 온라인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 중 노인은 여성(80.4%),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에 이어 4위(72.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갈등이며,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25%, 심각한 편이다 54%)고 대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절반(49%)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세대갈등은 사회가 통합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대갈등은 ‘언어’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대갈등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5. 7 기사 "아파트관리소에 164회 전화해 욕설한 60대 항소심도 실행"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이 기사는 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관리사무소에 164차례 전화해 욕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 “무식한 늙은이들 적당히 살다가라. 니네가 저출산의 원인이고 개고기가 나라 쳐팔아먹는 뒷받침이다”이다. 이 표현은 노인집단 전체를 특정하고 있으나,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70세이상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판단력 제로.”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노인’(69.2%)이었으며, 온라인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 중 노인은 여성(80.4%),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에 이어 4위(72.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갈등이며,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25%, 심각한 편이다 54%)고 대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절반(49%)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세대갈등은 사회가 통합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대갈등은 ‘언어’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대갈등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6. 20 기사 "검찰, '○○ 포르쉐 탄다' △△△ 등 징역형 구형"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이 기사는 □□ 전 법무부장관의 딸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 변호사 등 운영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 “70세이상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판단력 제로.”이다. 이 표현은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이, 노인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 표현은 노인집단 전체에 대한 표현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므로 노인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교통사고에 의한 의사사망 사건 관련 뉴스 게시물의 댓글 “덤프트럭 운전은 원래 무식하고 못배운인간들이나 하는 짓”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특정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 조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편, 한국사회에 큰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직업들에 대한 비하에 의한 계층갈등이다. 세밀화된 계층구조 하에서 계층간의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 표현 들 중 특정 직업에 대한 혐오표현, 특히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여, 이를 통해 계층갈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

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6. 18 기사 “‘흉부외과 명의’ ○○○ 교수 치어 숨지게 한 트럭 기사 불구속 입건”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이 기사는 △△△△병원 ○○○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후반 남성이 불구속 입건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 “덤프트럭 운전은 원래 무식하고 못배운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표현은 트럭운전사라는 직업을 가진 집단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고 있지만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심의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카페의 게시글 “겔충들 암튼 밀선 쥬빵 개좋아해 꼭 티낸다 ㅋㅋㅋ

아 겔충이 좋아하는 조합이라 찐인줄~^^

개발끈하네 맞아 밀빵도 좋아함 빵른러들 많은거 알잖아 밀원 빵른러 ㅇㅇ ”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성소수자 대상은 ‘61.3%’였으며, 이는 노인(69.2%), 특정 지역 출신(68.9%), 여성(67.4%), 페미니스트(64.8%)에 이은 순위였다. 온라인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 중 성소수자는 여성(80.4%),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에 이어 5위(71.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에 큰 문제 중 하나는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부족이다.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수집단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 심의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글의 표현에 있어 명료성, 이해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은 설령 그 표현이 혐오를 담고 있더라도 사회성원들에게 혐오표현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심의에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9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 카페의 한 게시물이며, ‘밀선 쥬빵’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게시물에서 사용된 ‘밀선 쥬빵’, ‘밀빵’, ‘빵른러’, ‘밀원’ 등의 표현은 일부 팬덤에서 좁게 사용되는 단어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 해석이 불가하여 해석의 명료성, 이해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은 설령 그 표현이 혐오를 담고 있더라도 사회성원들에게 혐오표현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7-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한 원로정치인의 발언과 관련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늑다리들 이제 제발좀 집에나 가라”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불가결한 권리이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 입헌 민주주의의 유지와 형성, 진리에의 도달, 사회의 안정과 변화 간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해악이 미칠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혐오표현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의 대상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노인’(69.2%)이었으며, 온라인에서도 혐오표현을 접한 대상 중 노인은 여성(80.4%), 특정 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에 이어 4위(72.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갈등이며, 한국리서치의 202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25%, 심각한 편이다 54%)고 대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절반(49%)이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세대갈등은 사회가 통합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대갈등은 ‘언어’를 통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세대갈등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3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2023. 1. 5 기사 “○○○ “△△△이 □□□보다 훨씬 대단..뱃심으로 꽃꽂이 버터”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며, 이 기사는 원로정치인이 야당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 중 하나인 “늬다리들 이

제 제발좀 집에나 가라”이다. 이 표현은 원로정치인을 비롯하여 노인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표현에서는 노인을 ‘늙다리’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표현했고,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맥락상 나이 많은 기성 정치인들에 한정된 집단에 대한 표현으로 판단되며 그들의 정치계 은퇴를 요구하는 표현 정도로만 봐야 하기에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3호의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일부 위원은 “늙다리들 이제 제발좀 집에나 가라”라는 표현은 특정 집단인 ‘노인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3.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젤 썩은 것들이 교회 목사들 같아 이것들이 진짜”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과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 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뉴스 기사에 덧붙인 댓글로 “젤 썩은 것들이 교회목사들같아 이것덜이 진짜”라고 표현돼 있다. 이는 표현물 게시자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품위와 격조를 잃은 거친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왜 눈치줘 ㅏ 개독한테 화 좀 낼 수 있지”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과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 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왜 눈치줘 ㄱ 개독한테 화 좀 낼 수 있지”라는 내용의 표현으로 표현물 게시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거친 언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예수쟁이 이 꼴통 놈들”이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과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 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예수쟁이 이 꼴통 놈들”이라는 내용의 표현으로 표현물 게시자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거친 언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흉부외과 의사 ○○○의 사망을 전하는 2023.6.18.자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에 “개불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그의 죽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게재되자 이 게시물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

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물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 진짜 있습니다 성경에도 전도서에 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샀은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에 다른 이유? 생각안해보셨나요? 왜 일까요?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죄질에 따라 죽음도 다르죠 ○○○님은 덤프트럭에 깔려서 끔찍하게 돌아가신걸 볼 때 전생에 대한 큰 죄가 있을거라

고 판단됩니다 (중략)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른 이유는 전생의 지은 죄에 댓가 때문입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격조를 잃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기사의 내용을 고려할 때 더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나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이슬람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참수와 강간을 하는게 이슬람이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살아있는 돼지’ 등장한다…갈데까지 가는 ○○ 이슬람사원 갈등”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광역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소 거친 언사, 격조를 잃은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이슬람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이슬람 아웃 절대 발 못 붙이게 하라 야만인의 종교”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회사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조사일 2021. 3. 18.~ 2021. 4. 7.)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였는데,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이다(<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종교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 그리고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https://hrcopinon.co.kr/archives/2518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에 따르면 ‘종교가 있다’는 21,553,674명으로 비율은 43.9%였다. 불교 15.5%(7,619,332명), 개신교 19.7%(9,675,761명), 천주교 7.9%(3,890,311명), 원불교 0.2%(84,141명), 유교 0.2%(75,703명), 대순진리회 0.1%(41,176명), 대종교 0.01%(3,101명), 기타 0.2%(98,185명)였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

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기사 “‘살아있는 돼지’ 등장한다…갈데까지 가는 ○○ 이슬람 사원 갈등”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광역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이슬람 아웃 절대 발 못 붙이게 하라 야만인의 종교”이다. 앞서 종교인구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슬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0.2%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종교적으로 소수자인 이슬람 구성원을 분리·구별하면서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으로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3심-혐-8-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4. 03. 15.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이슬람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난 이슬람은 박해라 생각안함(이하 생략)”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대상 게시물은 “‘돼지 머리’ 이어 살아있는 돼지 통으로...○○ 이슬람 사원 갈등 폭발”이라는 제목의 2023.4.24.자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해당 뉴스 기사는 △△△ 지역의 이슬람사원 공사를 둘러싸고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문명권에서 식육을 금기하는 돼지고기를 시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난 이슬람은 박해라 생각안함.. 현재 전쟁과 분쟁의 대부분은 종교이고 그 종교중에 가장 극

단적인 종교는 이슬람임 께히 개슬람이라고 하는게 아님”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거친 언사를 이용하거나 격조와 품위를 잃은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